

# 2023년도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254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3년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- ※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## 2. 주요내용

- (재)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: 759,362천원
  -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

## 3. 세부내용

###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3년	2022년	증감액		
1	재)하남시 자원봉사센터	759,362	706,206	53,156	운영비 예산 감소 및 사업비 증가 등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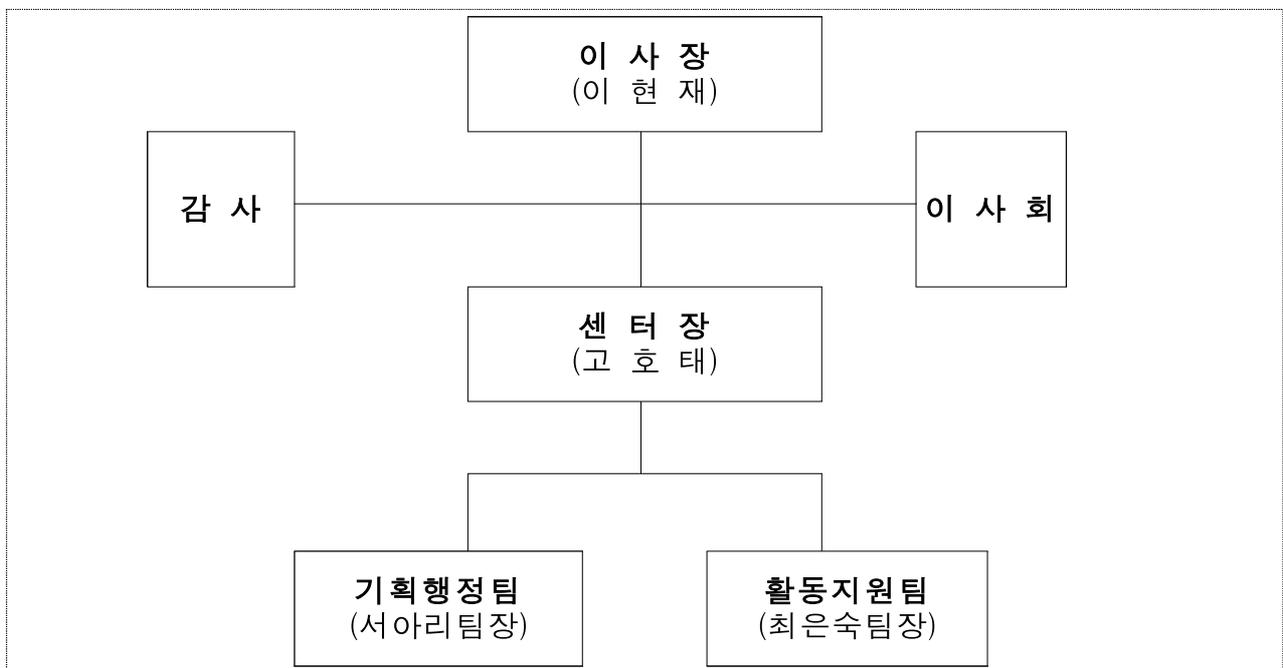
## □ 출연대상

### ○ 설립근거

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9조, 「민법」 제31조, 제97조
-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### 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13. 1. 1.
- 설립목적 :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·장려함으로써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
- 소재지 :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28번길 5, 2층(덕풍동)
- 조직현황



### 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자원봉사자 연계 및 배치 상담
- 자원봉사 전산자료 관리
-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
- 봉사자 포상계획 수립 및 운영 등

## □ 출연금액 : 759,362천원 (2022년 706,206천원)

### ○ 전년대비 증감액 : 53,156천원

### ○ 증감사유

-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조정 등

□ 출연근거

○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정보화 구축을 통한 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,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의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가능

□ 검토의견

○ 2022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('21년 실적) 결과(나등급)와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을 반영하여 인건비·운영비등은 증액 편성 최소화 또는 삭감

○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은 적극 반영

○ 부서검토 결과

구 분	출 연 금 액			비 고
	'23년 반영액	'22년 출연금	증감액	
자원봉사센터 운영	759,362	706,206	53,156	▶ 전년대비 8% 증액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자원봉사센터 설치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의 예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센터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센터장은 결산관련 자료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